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정비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91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정비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6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Ⅲ. 검토의견

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정비

개정안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①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사업 중지·시설 등의 사용 중지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u>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 ----- ----- ----- ----- ----- -----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④----- ----- -----

현행	개정안
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⑦ (생략)	----- ----- -----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 -----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3조1항¹⁾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²⁾ 및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야적, 신기·내리기, 이송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별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설치, 살수 조치, 간이포장 등 기준을 이행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조 제4항³⁾에 따라 조치의 이행·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⁴⁾에 따라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령상 모호한 점이 있어 현행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별도 이행·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업중지, 시설 사용 중지·제한 등 제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의무 미이행시 제재	
		현행	개정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변경신고		X	사업 중지, 시설 등 사용 중지·제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필요한 조치	1차	설치·개선 명령	- 설치·개선명령 - 사업 중지, 시설 사용 중지·제한
	2차*	- 설치·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업중지, 시설 사용 중지·제한	

* 1차 처분 이후에만 가능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시 제재처분 근거를 규정한 동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4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입법례가 있음.

[유사 입법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⑩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제도

□ 비산먼지 정의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을 말하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경우 ‘비산먼지’라고 총칭함

□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

- (규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신고) 사업장 명칭·대표자 변경, 배출공정 변경, 사업규모 증가 또는 종류 추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경우 변경신고
- (억제조치)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방진막·방진벽 설치, 집진시설 설치, 세륜시설 설치, 살수 조치 등 배출공정별로 기준 준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현황 및 점검 실적

○ 신고현황

(단위 : 사업장 수)

연도	계	시멘트, 석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비금속 물질 제조·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송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기타
2024	44,715	2,366	3,383	581	858	34,502	428	2,473	254
2023	46,356	2,322	3,471	571	863	36,304	456	2,109	263
2022	47,541	2,191	3,228	550	790	38,207	413	1,918	243

○ 점검현황

(단위 : 개소, 만원)

연도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과태료	고발
			시설기준 부적정	신고 미이행	기타	개선 명령	경고	사용 중지	조치이행 명령		
2024	33,572	3,393	1,602	1,610	144	1,146	1,520	152	557	74,870	788
2023	35,897	3,594	1,627	1,821	176	1,185	1,640	142	560	122,948	946
2022	37,840	3,762	1,995	1,731	109	1,298	1,567	125	741	97,249	832

※ 참고자료 2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체계

